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(안)

의안 번호	219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6. 2. 17.

발 의 자 : 김영진의원외 5인

1. 제안이유

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.세출 추가경정 예산(안)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우리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
- 우리위원회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
- 위원의 정수는 11 인으로 구성

3. 참고사항

가. 지방자치법 제50조

나.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2항